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윤희 의원입니다.
- □ 본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 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 현재 음수대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경미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이 감면액을 이용하여 전문업체를 통해관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관리보다는 용역을 통한 음수대 관리 시 지적률이 더 낮게 나오고 있고 상당수 학교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없이 음수대 유지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음수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 임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 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